

전주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가합21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담당변호사 박영만, 장기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승중

피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기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별지 목록 [1군]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2021. 12. 1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 주식회사는 B에게 전주지방법원 2021. 12. 24. 접수 제1223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2군] 기재 각부동산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2021. 12. 1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 주식회사는 B에게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21. 12. 24. 접수 제293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3군] 기재 각부동산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2021. 12. 1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 주식회사는 B에게 전주지방법원 2021. 12. 24. 접수 제1223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목록 [4군]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B과 피고A 주식회사 사이에 2021. 12. 1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나. 피고 A 주식회사는 B에게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21. 12. 24. 접수 제128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하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토목, 건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B은 1998.경부터 C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2021. 8. 7.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사람이다.

3)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B이 2021. 4. 1.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등

- 1) C은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6. 6. 13. 원고와 보증금액을 10억 1,250만 원, 보증기한을 2017. 6. 12.까지, 대출예정금액을 13억 5,000만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이후 보증기한이 수회 연장되고 보증금액은 9억 7,5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 2) C은 2016. 6. 15. D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도액을 13억 5,000만 원, 대출기한을 2017. 6. 12.까지로 정하여 기운일반당좌대출을 받았다(이후 대출기한이 계속 연장되고 한도액은 13억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에 의한 대출로서 대출원리금이 약정된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증감·변동하는 것이다.
- 3) B은 이 사건 대출 당시 C의 대표이사였는데, 이 사건 대출에 따른 C의 D은행에 대한 채무와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모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이하 후자의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른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 4) B은 앞서 가.2)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21. 8. 7. C의 임원직에서 퇴임하였고, 2021. 10. 28. D은행에 “그 동안 C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대출을 받고 보증인으로 입보하였으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므로 모든 보증인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고, 이후 연대보증이나 대표이사 자격으로 자서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적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D은행은 B의 이 사건 신용보증에 대한 연대보증계약 해지 요청에 대하여 2021. 12. 6. 보증해지 처리를 해주었다.
- 5) 이어서 B은 2021. 11. 2. 원고에게도 “그 동안 C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보증인으로 입보하였으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므로 모든 보증인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고, 이후 연대보증이나 대표이사 자격으로 자서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적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21. 11. 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B은 다시 2022. 2. 11. 원고에게 “원고가 위 통지서를 2021. 11. 3. 수령하고 답변이 없으므로 변경처리 된 것으로 인지하고, B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보증인으로서 입보한 부분에 관하여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재차 강조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매매예약 및 가등기설정 등

한편 B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매매예약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 내지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라. 신용보증사고통지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C이 2022. 2. 15. 기일경과연체를 이유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3, 17,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내지 5, 7 내지 9, 11,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B는 C의 실제 경영자 내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사의 지위에 퇴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C은 2021. 12.경 이미 각종 소송 및 보전처분이 개시되어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채권자와 C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사전구상권이 발생함으로써 채무자의 보증채무가 확정되고 난 이후인 2022. 2. 11.경에야 B의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에 대한 해지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B은 적어도 2022. 2. 11.경까지 C에 대하여 발생한 채무 일체에 대해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C은 원고에 대하여 대위변제 구상금,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상 대지급금, 위약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B은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상 연대보증인으로서 C과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2) 피고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이 원고의 C에 대한 사전구상권 채권이 발생하기 전인 2021. 11. 2.경 해지되어 B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가. B이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B은 C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이 사건 연대보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C의 실질 경영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위와 관계없이 C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따른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B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대출은 대출채무액의 규모, 대출사유 등에 비추어 C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위 대출금과 연결된 계좌(D은행 (계좌번호 1 생략)는 이 사건 신용보증이 체결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C의 D은행에 대한 대출금과 연결된 계좌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2) C의 D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B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1. 12. 6.경 보증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그 당시 C의 대표이사였던 E로 연대보증인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 위 계좌 잔액(-1,130,688,558원)과 B이 위 연대보증 계약을 할 무렵인 2016. 6. 13.경 위 계좌의 잔액(-947,187,705원)을 비교해 볼 때, C이 상환하여야 할 금액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D은행이 연대보증인을 변경해준 것을 보면,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계약의 체결 및 변경은 대표이사 지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3) 그밖에 C과 D은행 사이의 대출거래 관계에서 B이 대표이사 지위가 아닌 실질 경영자의 지위로서 참여한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B은 이 사건 대출을 위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금 채무와 달리,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른 구상금채무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지위와 관계없이 연대보증을 하였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원고의 사전구상권 발생 전에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1) 살피건대,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서(갑 제1호증) 제6조 제1항에서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제13호)’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보증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제1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고가 사전구상을 행사하기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원고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B에게 사전상환채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서면통지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한지 여부를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2021. 12.경 위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은 B이 2021.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통보서의 도달로 인하여 이미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의 해지 이전에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 계약이 해지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B에 대한 채권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결국 원고가 B의 청구취지 기재 재산처분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 권리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B에 대한 채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춘순, 판사 신서영, 판사 박정언

